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67
----------	-------

발의연월일 : 2025. 9. 29.

발 의 자 : 이상식 · 민홍철 · 이병진
복기왕 · 황정아 · 조계원
김문수 · 이언주 · 양부남
이광희 · 박정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고용 등에 대한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큰 산업으로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첨단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은 필수적임.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는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역으로서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인바, 개발부담금의 경우 같은 법에서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기술집적, 인재 확보와 클러스터를 통한 집중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선제적·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현재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와 세제혜택 등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호 단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9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생 략)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 금을 면제한다.	③ ----- ----- -----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u>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 업단지인 경우는 제외한다.</u>	1. ----- ----- ----- ----- <u>. 다만,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중 「국가첨단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 정된 산업단지 외의 산업단지 인 경우는 제외한다.</u>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